



2023
HAPPY NEW YEAR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6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19.~12.25.) -

December 26,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새정부 경제정책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함 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에 선제적·적극적 대응 * 전 세계적으로 40년만의 고물가 직면 → 주요국 가파른 금리인상 → 달러가치 상승 – 비상경제대응체계 가동, 수차례 걸쳐 민생·물가안정 대책* 추진 * 유류세·할당관세 인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부동산시장 정상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 –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시장 안정을 위한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 안심전환대출 등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높은 성장률 기록 ②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통해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 전환 * i) 민간중심 역동경제, ii) 체질개선 도약경제, iii) 미래대비 선도경제, iv) 함께가는 행복경제 – 규제혁신, 세부담 완화, 수출·투자지원 등으로 민간활력 제고 – 건전재정 기초 확립 및 구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 – 신산업·신기술 육성,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 미래대비 – 사회안전망 보강, 근로유인·기회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2022-12-21

부처	내용	일시
----	----	----

< '新성장 4.0 전략' 체계도 >



⇒ 국정과제 연관성, 관계부처·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대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 발굴·추진
 * 상기 15대 프로젝트 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 지속 발굴

부처	내용	일시
< ‘신성장 4.0 전략’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 >		
1.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❶ (미래형 모빌리티) '30년까지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25년까지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❷ (독자적 우주탐사)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구축('35)		
❸ (양자 기술)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26), 양자센서 시제품 3건 개발('27)		
❹ (미래의료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30),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9)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SW) 5개 이상 제품화(~'25)		
❺ (에너지 신기술) 혁신형 SMR('28), MSR('26)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27년 1~2MW급, '30년 10MW급)		
2. (新일상) Digital Everywhere		
❶ (내 삶 속의 디지털)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30),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5G 전국망 구축('24), 6G('30) 및 위성인터넷 기술 확보		
❷ (차세대 물류) 부산신항('26)·진해신항('29)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 로봇·드론 배송 등 新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식품 등 콜드체인 구축		
❸ (탄소중립도시) '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10개소 조성		
❹ (스마트 농어업)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27), 민간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6개소, '26), 푸드테크 육성		
❺ (스마트 그리드)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5), 공공 ESS 구축('23)		
3. (新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❶ (전략산업 No.1 달성) 반도체 반도체 대규모 투자 지원('23~) 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상용화('26) 디스플레이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초격차 확보('23) 조선·해운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27)		
❷ (바이오 혁신)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25) 100만명 규모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32)		
❸ (K-컬처 융합 관광)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7),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30)		
❹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25), 메타버스·확장현실 기술개발('23~)		
❺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방산·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특례 심의안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사전행사로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진행함 * 규제샌드박스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승인기업 사업화 컨설팅 확대를 위해 ① 산업기술진흥원, ② 에너지기술연구원, ③ 전자기술연구원, ④ 강북삼성병원 간 협약 체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산업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제도정비를 위한 3개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 미래전략기획형, 혁신기술 성과창출형, 민군 협력형 ② 500억 규모 전용펀드 신설, CVC 투자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지원 강화 ③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④ 다양한 특례기간* 도입, ‘샌드박스 종합포털’ 구축 등 기업 편의성 제고 * (現) 일괄 2년 → (改) 단기실증과제 3개월~1년, 일반과제 2년, 대형리스크 과제 3~5년 ⑤ 법령정비완료의무 강화, 법령정비책임제 도입, ‘융합규제특별법*’ 제정 등 법령정비 3종 세트 추진 * 법령정비 착수~완료 기간 중 舊법령 적용을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특별조치 규정	2022-12-20
금융 위원회	• 상장기업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법예고(9.5~10.17), 규제위(11.10), 증선위(11.15), 금융위(11.23), 법제처(12.5), 차관회의(12.15)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5.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금년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종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될 예정임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시 강화) 10.18.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음 - 일반주주와 투자자가 물적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음	2022-12-20

부처	내용	일시
	②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됨 * (法 § 165-5③)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令 § 176-7③)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적용 →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가능 →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함 ③ (상장심사 강화) 9.28.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 ('22.12.7., 상장규정 개정) - 상장과정에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의 이행여부, 주주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반주주 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음 '22년 발표한 일반주주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①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도 6개월 의무보유 적용 (2/23) ② 기업구조 개편시 주주보호 정책 기술, 계열기업 내부거래시 설명 강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기재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선 (3/7) ③ 물적분할시 공시 강화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및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9/5) ④ 상장기업 내부자는 주식 등의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공시 (9/13) ⑤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도입 (9/26) ⑥ 주식양수도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연내 발표 예정)	

부처	내용	일시
	•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예:데이터 활용)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 (0.5조원→1조원) 및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②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산업 진입규제 개선 ③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2022-12-20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 시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수입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을 총사업비는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은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7조제1항, 제25조의3제1항 등)	2022-12-20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20. 시행)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산정할 때 종전에는 최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의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기본계획,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시멘트 소성로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4조제1항 후단, 제55조제2항제2호, 제55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 등)	2022-12-20
보건복지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22. 시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정제도’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제도’로 변경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2호, 2021. 12. 21. 공포, 2022. 12. 22. 시행)됨	2022-12-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 제5조의 제목,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3.21. 시행 예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개인투자조합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은 전문개인투자자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제3항제3호 신설, 제9조제1호가목, 제37조제1호가목 등)	2022-12-20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2022.12.23. 시행) 상가지역의 임대인 및 상인 등 사업자 간 공존 및 상생을 증진하고 상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 7. 27. 공포, 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공포, 4. 28. 시행)이 제정됨 *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이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동의서, 구역경계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상권전문관리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지정 신청서에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2-12-23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제3조의2 단서조항) ※ 의견 제시기간 : 12/20(화)~12/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2-12-20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근 편의점에서 치킨, 어묵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 나무젓가락 제공 여부가 상이하여 현장 혼선이 발생함. 이에, 편의점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더라도 오븐, 기름 등을 이용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반환 청구시 변경내용 확인 및 부담금 납부 확인 등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 증빙자료 같음 (안 제10조) -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반환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보시스템(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첨부서류를 같음하도록 규정	2022-12-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편의점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 제공 허용 (안 별표2) 종합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체인화편의점)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12/20(화)~2023/1/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안 제6조)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②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 ‘신용카드등’ 납부 허용 (안 제22조제3항) - 개발부담금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12/19(월)~2023/1/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 제출	2022-12-19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안 별표2)	2022-12-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②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고지 및 안내서 수정 (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가 고지된 안내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양수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12/19(월)~2023/1/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 제출	
금융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10.6.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조정 (안 제4조) - 원칙적으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천억원에서 자산 5천억원으로 조정 ② 한국회계기준원 소관 업무 명확화 (안 제7조) -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및 해석으로 조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은 한국회계기준원 담당 업무로 명확히 하는 반면, 금융위원회의 한국회계기준원 위탁업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뿐 아니라 공시기준도 포함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안 제9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면제 대상을 자산 1천억원 미만 비상장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로 조정 ④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조정 (안 제15조) -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소유·경영 미분리)의 자산 기준을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조정 ⑤ 부정행위 자진신고자 보호 (안 제31조 및 제32조) -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감경 및 면제 사유를 완화하고, 익명신고자의 인적사항 제출의무를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전에서 조치 후도 가능하도록 허용 ※ 의견 제시기간 : 12/22(목)~2023/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로 제출	2022-12-2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2.10.6.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안 제6조) ②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면제 (안 제26조) ③ 제재정보 공개범위 정비 (안 제38조) ④ 위반행위 통보업무 위탁범위 명확화 (안 제39조)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가중사유 단서조항 추가 (안 별표 7) ⑥ 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사유 신설 (안 별표 8) ⑦ 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 (안 별표 9) ※ 의견 제시기간 : 12/22(목)~2023/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로 제출	2022-12-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u>」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안 제24조의5 신설)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②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안 제39조의4 신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도록 함 -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등의 업종 및 현재 재무상태,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2022-12-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 지원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 (안 제39조의6 신설) -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상환 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기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안 제160조제2항 신설) -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 (안 제161조제1항)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2022-12-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 (안 제429조제3항)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④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 (안 제429조제4항)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단순 의무태만의 성격이 강하고,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징금, 고발까지 규정된 현재의 제재 수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이를 단순히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그 제재수준을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법 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1조제3항제2호, 제43조제6항제1호의2·제6호·제7호 신설)	2022-12-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중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한편,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낼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기재부 소득세제과로부터 제출 받은 “각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임(‘21년도 기준 6억원에 불과)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차익은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인 5천만원은 벤처기업 지원 효과가 미비하므로, 자금 여력은 없으나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로부터 제기됨 이에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 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을 도모하고,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자 함 (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삭제)	2022-12-23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국내대리인이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5제2항)	2022-12-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제품의 사고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에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는 경우 또는 사고 횟수가 3회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수의 사고를 사업자가 은폐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규정이 다소 까다롭고 미흡한 탓에 최근 가전제품의 유리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수십차례 발생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치 4주 이상의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고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3회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를 누락한 채 수만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일이 발생해 사업자의 보고 의무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조의2제1항제5호 · 제6호 및 제15조의4 각각 신설)	2022-12-1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하거나,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음. 또한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양도받아 유통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어도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이 유통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허법 등 타 지재권법은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8조제5항 신설)	2022-12-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대·중·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신설)	2022-12-1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3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1,328곳에 달함 향후 휴·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막대한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에 불과함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신설)	2022-12-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법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	2022-12-23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임.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에 대한 회계법인·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022-12-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안 제17조의2) ② 노동조합은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 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 (안 제25조의2) ③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총회·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5조의3) ④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서류의 항목을 명시하여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함 (안 제14조제2항 및 제26조) ⑤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제3항)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2/28(수) 14:00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안건 심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12/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2호 발간 -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12/27(화)	국회부산도서관 건립백서 발간	
	12/30(금)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 발간	
입법조사처	12/27(화) 14:00	「2022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개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별첨1] 제401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조특위	12/27(화) 10:00	기관보고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 기관 보고 (국무총리실 등 9개 기관)
	12/29(목) 10:00	기관보고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 기관 보고 (대검찰청 등 9개 기관)
정무위	12/26(월) 14:00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2/28(수) 10:00	법안2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12/26(월)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12/26(월) 10:3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2/26(월) 11: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과방위	12/27(화) 10:00	법안1소위	- 법안 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26(수) 14:00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 -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6(수) 14:00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김원이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2/27(화) 10:00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27(화) 14:00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박덕흠·변재일·이양수· 정우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27(화) 14:00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심화되는 불평등과 경제위기, 그 속에서의 노점상의 현실과 대안	우상호 의원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8(수) 14:0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진선미·임호선 의원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2/19(월)	「팩트북」 제100호 발간 - 종합국력	
	12/21(수)	「현안 외국에선?」 제50호 발간 - 싱가포르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	
	12/22(목)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4호 발간 -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예산정책처	12/20(화)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	
	12/20(화)	「NABO 경제동향」 12월호 발간	
	12/23(금)	「NABO 재정동향 & 이슈」 제21호 발간	
입법조사처	12/20(화)	「NARS 현안분석」 -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12/21(수)	「이슈와 논점」 -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12/21(수)	「NARS 입법정책」 -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19(월) 14:00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	서영교, 김한정, 신정훈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2/20(화) 10:00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김성주, 조해진 의원실, ERRI 경제개혁연구소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20(화) 14:00	기업의 ESG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	강병원, 김성원, 박상혁,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1(수) 14:00	탄소중립시대, 철도가 나아갈 방향	이종배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22(목) 14:00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	김병욱, 김정재,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